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성함제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2255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 : 2021년 02월 16일
발 의 자 : 성함제 의원(1명)
찬 성 자 : 김경우, 김재형, 김제리,
문장길, 이상훈, 이영실,
임종국, 전석기, 최 선,
최웅식, 황규복 의원(11
명)

1. 제안이유

-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5조(우대)에 따라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·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·입장료·수강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「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」 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에 따른 감면대상자에 포함되지 못해 병역명문가를 지정하는 취지와 활성화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바,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주차장 감면대상에 포함코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‘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’를 포함토록 함. (안 제7조제1항제13호 신설)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병역법」, 「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」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참조

다. 기타 : 신·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① 시장은 제6조제1항 본문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. 이 경우,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한 주차장 이용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고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.</p> <p>1. ~ 12.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<u><신 설></u></p>	<p>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①</p> <p>1. ~ 12. (현행과 같음)</p> <p>13. 「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」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.</p>

문서번호	
------	--

미참부 사유서 (2호)

요청인 : 성흠제 의원	담당 : 조도형 과장 이정수 팀장 이수아 예산분석관
접수일 : 2021.01.29	
회신일 : 2021.02.03	내용문의 : 02-2180-7952

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참부 사유서

목 차

1. 비용발생 요인
2. 미참부 근거 규정
3. 미참부 사유
4. 작성자



1. 비용발생 요인

-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 제1항제13호에 따라 재정 수입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병역명문가의 주차장 이용실적 파악이 어려워 비용추계가 곤란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2항

3. 미첨부 사유

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(제3조제1항제2호)
 - 안 제7조(주차요금의 감면 등)제1항제13호를 신설함에 따라, 주차요금의 감면대상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를 포함(100분의 20 할인)함으로서, 세입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나, 병역명문가의 주차장 이용실적에 대한 자료가 없어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움
- * 2020년 기준, 우리나라 전체 병역명문가는 1,017가문, 5,222명(병무청 자료)

4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예산정책담당관
담 당 관	조도형
정책조사팀장	이정수
분석관(주무관)	이수아

☎ 02-2180-7952
e-mail : sua8873@seoul.go.kr